

대한내분비혁신의학회 정관

(The Korean Society for Endocrine Innovation Constitution, 2025 Revision)

"KSEI exists to explore the invisible axes of healing — bridging science, philosophy, and clinical innovation under Holionex Medicine."

대한내분비혁신의학회는 의학의 본질을 다시 묻고, 내분비와 대사를 넘어 생명의 축을 바라보는 혁신의 길을 걷는다.

제 1 장 총칙 (General Provisions)

제 1 조(명칭)

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내분비혁신의학회(The Korean Society for Endocrine Innovation, 이하 "KSEI")라 한다.

제 2 조(목적)

본 학회는 대한홀리스틱의학연구회(Korean Society for Holistic Medicine Research) 산하 공식 학술기구로서, Holionex Medicine by Dr. YVY 의 철학을 기반으로 내분비·대사 Root-Cause 기반의 통합적 의료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글로벌 의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본 학회는 현대 의료 환경에서 증가하는 만성질환의 복잡성과, 의료진의 진료 부담, 그리고 환자·의료진이 함께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인식하고,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지속 가능한 근거 기반의 새로운 의학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를 연구·교육·확산한다.

본 학회는 근거 기반 의학(EBM)과 통합 생명과학을 연결하여 학문과 임상이 공진화하는 새로운 글로벌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며, Root-Cause 중심의 환자 중심 의학을 확립함으로써 국내외 의료 발전에 기여한다.

제 3 조(소재지)

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.

제 4 조(사업)

본 학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술대회, 심포지엄, 세미나, 포럼 등의 개최
2. Holionex Medicine 관련 연구·교육·출판
3. Root-Cause 기반 진단·치료 접근법 개발
4. Holionex 기반의 임상·교육 프로그램 개발
5. 학술지 및 연구자료의 발간과 배포
6.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
7. 회원 자격인증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
8. 연구기금, 학술상, 연구상, 공로상 등 제도 운영
9. 임상가·연구자·교육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구축
10.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원 (Membership)

제 5 조(회원의 구분)

1. **정회원(Regular Member)**: 내분비내과 전문의 또는 내과전문의로서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. 단, 타과 전문의, 의학 생병과학, 기능의학 전문가 중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인준으로 정회원 자격이 될 수 있다.
2. **준회원(Associate Member)**: 학회의 취지에 동의한 자로서, 개인 또는 단체 모두 포함할 수 있다. 준회원은 학회의 사업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나, 총회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.
3. **특별회원(Special Member)**: 학회의 사업, 연구,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,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위촉된다.

제 6 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,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와 학회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.

제 7 조(회원의 징계)

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,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,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
제 3 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 (Officers & Executive Committee)

제 8 조(임원의 구성)

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조직위원장(회장) 1 인
2. 총무 1 인
3. 감사 1 인
4. 사무총장 1 인 (비의료인 가능) 총무 결원시 업무를 대행한다

필요 시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부회장, 학술이사, 연구이사 등을 둘 수 있다.

제 9 조(임원의 임기)

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0 조(임원의 직무)

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 감사는 재정 및 운영을 감사한다.

제 11 조(운영위원회)

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운영위원회는 회장(조직위원장), 총무, 감사,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, 주요 안건 및 예산 관련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 4 장 위원회 (Committees)

제 12 조

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회 내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학술위원회
- 프로그램위원회(연구 교육)
- 홍보·미디어위원회
- 정책·대외협력위원회
- 윤리위원회
- 국제교류
- 재정
- 발전기획
-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
- 각 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 13 조(위원 자격 및 구성)

위원회의 구성, 역할, 위원의 자격 및 임기는 학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정관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 5 장 사무국 및 직원 (Secretariat & Staff)

제 14 조(사무국)

학회는 원활한 사무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며, 사무총장과 사무원(간사) 등을 둘 수 있다. 사무총장은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장의 지휘 아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제 15 조(직원의 임용 및 보수)

학회는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 사무총장을 둘 수 있으며, 이사회의 의결로 임용한다.

간사 및 사무직원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.

직원의 임용기간, 근무형태 및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제 6 장 재정 (Finance)

제 16 조(재원의 조성)

학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회원의 회비
2. 대한홀리스틱의학연구회(KSHMR)의 지원금
3. 기부금 및 찬조금
4.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

제 17 조(회계연도 및 감사)

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, 감사는 회계 및 운영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7 장 정관의 개정 및 해산 (Amendment & Dissolution)

제 18 조(정관의 개정)

본 정관의 개정은 회장의 제안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9 조(해산)

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해산 시 잔여 재산은 공익 기관에 귀속한다.

부칙 (Supplementary Provisions)

제 1 조(시행일)

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.

제 2 조(준용규정)

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학회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.